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
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인순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인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28일

발의자 : 강수진, 고영옥, 김경이, 김육영,
박영섭, 소형준, 양순임, 이관우,
이용진, 이인순, 임태근, 정기혁,
정병기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를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4조)
- 라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사 규정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마.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사업 규정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여성가족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4. 3. ~ 2025. 4. 8.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
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
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
다)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
이를 위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
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
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
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
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
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

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 사항
3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,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권리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
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4.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